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2005. 1. 19(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 차 례 >

I. 추진 배경 및 경위

II. 현황과 인식전환 필요성

III. 주요 문제점

IV. 개선방안

1.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V. 기대효과

VI. 향후 추진계획

<별 첨>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운영 현황

I. 추진 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국방획득 분야는 과거 수차례의 국방부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조직·의사결정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지속되어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획득관련 비리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다수 발생

<대 통 령 지 시>

- 군납비리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대안을 검토하고 제도적인 개선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03. 12. 23(화) 국무회의시>
- 획득업무 시스템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추진할 것 <'04. 1. 27(화) NSC회의시>

-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Zero- Base에서 근본적·전면적인 개혁방안 모색

□ 추진 경위

- '04. 3. 5 국무총리 산하에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위원 15명(차관급 정부위원 9, 민간위원 6)
 - 이를 지원하기 위해 '04. 3. 22 실무추진팀 편성·운영
 - *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운영현황 : 별첨 참조
- 그동안 7차례('04. 3 ~ '05. 1월) 위원회 개최
 - 획득관련 조직 전면 재편 및 인력운영개선 등 획득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04. 8. 31 당·정·청 협의회

- 참석인원(홍재형 정책위의장 등 총 7명) 전원이 획득제도의 획기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
- 이를 위해 “신설청” 설립 취지에 적극 찬성

○ '04. 9. 9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 “신설청” 설립에 합의

○ 2차례(9. 17, 12. 7) 공청회 개최

- “신설청” 설치 및 주요 국방획득 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 신설 등 제도개선(안)에 대체로 공감•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 상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화·계열화 지정업체 : 제도 유지- 전문화·계열화 미지정업체 : 제도 폐지 |
|---|

○ '05. 1. 10 위원회 산하 현안조정소위원회 개최

- 6개 쟁점사항 조정

- | | |
|---------------------|------------------|
| ① 전력투자 중기계획·예산편성 주체 | ②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여부 |
| ③ “신설청” 조직설계 방안 | ④ 군 획득인력 인사관리 방안 |
| ⑤ 군무원·연구원 신분전환 문제 | ⑥ 획득관련 법령체계 |

○ '05. 1. 10일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행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 국방획득제도개혁방안에 대한 진단 실시중

- 분산된 조직을 통·폐합하여 “신설청” 설립 당위성과 제도 개선방향에 공감
- 진단결과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별도 보고 예정

II. 현황과 인식전환 필요성

1. 현 황

- 획득업무 종사인력은 약 2,500명으로 국방부 획득실·각군 사업단·조달본부·품질관리소 등 8개 기관에서 분산 수행

계	현역	군무원	일반공무원	연구원
2,537명	1,212명(48%)	652명(26%)	126명(5%)	547(21%)

※ 합참군·국방과학연구소 등 포함시 약 5,100명이 직·간접으로 획득업무에 참여

- 획득예산은 국방비(18.9조원)의 48%인 약 9조원으로서 무기체계 및 일반물자(급식, 피복, 유류 등) 등 확보에 투입

'04년 획득예산 : 9조 47억원					
전력투자비(6조 2,930)				경상운영비(2조 7,117)	
장비획득 3조 7,330	장비유지 1조 1,508	중앙지원 7,584	연구개발 6,508	일반물자 1조 8,939	군사시설 8,178

※ 중앙지원 :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이전비 등 정책사업비

2. 국방획득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

- 지금까지 국방 획득업무는 군의 무기체계 소요에 부응하는 국방부(군)의 내부일로 간주되어 왔음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포괄적·역동적 변화로 협력적 자주국방체제 확립이 절실한 현실
- 현대의 국가안보는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을 포괄한 국가 전역량이 결집된 개념으로 확대
- 국방획득업무는 협력적 자주국방 확립의 주요수단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핵심적 정책요소라는 인식 전환 필요
- 이를 위해 국방부(군)·정부·민간 부문의 총체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

Ⅲ. 주요 문제점

□ 효율성 측면

- 획득조직이 지나치게 분산·중복
 - 부서·단계별 단절된 업무수행으로 사업추진의 일관성 부족
 - 사업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통제부서가 과다
- 각군별 사전 할당식 자원배분이 관례화되어 통합적 시각을 갖춘 군사력 건설 제한

⇒ 사업기간의 장기화, 사업비 증가, 전력 불균형 등 초래

□ 전문성 측면

- 사업에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획득업무를 짧은 기간 빈번하게 보직을 바꾸는 현역군인들이 주로 수행
 - 외국업체와의 대등한 협상력 확보 곤란
 - 책임 있는 사업관리 미흡 및 민간 전문가 활용 제한
-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미흡
 - 1회성 단기 교육과정만 운영(국방대 사업관리과정, 7주)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자격요건 없이 순환 보직

⇒ 획득업무의 고비용·저효율 결과 초래

□ 투명성 측면

- 과도한 보안기준 적용으로 정보공개 미흡
- 폐쇄적이며,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일반화되어 내·외부 견제 미흡
- 막대한 규모의 예산 수반 사업을 대부분 국방부 내부훈령에 근거하여 수행, 적법절차 미흡
 - 부정·비리 발생의 환경 제공
 - 법 적용기준 미흡으로 문제 발생시 법률 분쟁 가능성 내재

⇒ 획득관련 비리 지속적 재발

□ 경쟁력 측면

- 그간 군수품의 안정적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 등을 위해 특혜적 산업 보호정책(전문화·계열화제도 등)을 지속한 결과
 - 신규업체 진입을 차단하여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가로 막는 폐해 증대
 - 방산업체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실발생 원가에 대한 고정 이윤율 적용 등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자발적 기술 개발 투자 및 원가절감 노력 부족
- 국외도입 위주의 전력증강 추진으로 국내개발 위축
 - 국내개발 투자 부족 및 핵심기술 해외 의존현상 지속

⇒ 방위산업 및 국방 R&D 경쟁력 약화 초래

IV. 개선방안

1.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기본 방향 >

- 분산된 획득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 획득업무 수행절차 간소화
- 합리적 자원배분 및 운영

가. 국방부 외청 신설

< 현실 태 >

- 획득관련 조직·기능이 국방부 본부, 각군 사업단, 조달본부 등 총 8개 기관으로 과도하게 분산·중복
 -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 사업관리 등 유사업무 중복 수행
 - 복잡한 의사결정체계로 책임소재 불명확, 사업지연 빈발

< 개선 안 >

- 획득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국방부 소속의 외청 신설
 - 통합대상 조직
 - 무기체계 획득업무 중 소요제기·결정 이후의 모든 업무(계획, 예산, 집행, 평가 관련기능) 수행부서
 - 무기체계와 연계된 시설사업 수행부서
 - 정보화 사업 중 전장관리체계사업 수행부서
 - 통합대상 인력 : 총 2,537명 (소요기획 부문을 제외한 획득관련 전체 인력)
 - * 현역군인 1,212명, 공무원 126명, 군무원 652명, 연구원 547명

- 조직 재편방향

- 현 획득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정부조직에 편입(국방부 외청 신설)
- 현 획득관련 정원 및 직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
- **주요 정책결정은 民**(전문성, 객관성 확보), **사업관리는 軍**(전문성, 무기체계 운용경험 활용) 위주로 수행하되, 직급별 民·軍 균형보직 원칙
- 유사기능 통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및 필수기능 보장
 - 통합 기능 : 정책·기획, 행정지원, 사업지원 등
 - 보장 기능 : 방산육성·수출지원, 기술관리, 상시감시 등

< 효과 >

○ 조직·기능 단순화(8개 기관 → 1개 기관)

구 분	현 조직(통합대상조직)	통·폐합	
획득정책	국방부(획득정책관실, 연구개발관실, 정보화기획관실)	정책·기획	“신설청”
계획·예산	국방부(획득정책관실),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전력계획처) 등		
사업관리	국방부(획득정책관실, 연구개발관실, 정보화기획관실), 각군(전개단, 조함단, 항사단, C4I사업부서), KMH사업단 등	사업관리	
계약관리	조달본부(4개 사업부), 각군(경리단)	계약	
규격·목록	조달본부(규격실, 목록실), 각군(군수사), 국방품질관리소(기술정보실)		
분석평가	국방부(분석평가관실), 각군(비용분석 부서)	평가	
시험평가	합동참모본부(시험평가과)		
품질보증	국방품질관리소(검사부서)	품질관리	
기술관리	국방과학연구소(기술부), 국방품질관리소(기술부서)	국방기술정보센터	

○ 인력 감축 : 약 10% 감축 예상(2,537명 → 약 2,200~2,300명)

* 정확한 감축인원은 직무분석 후 조직 재설계시 산출 가능

○ 예산 절감 : 전력투자비의 약 5%(3,000여억원) 수준 예상

* 인건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사업지연에 따른 낭비요소 제거 등

○ 절차 간소화

- 전력투자분야 중기계획 작성 (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심 의 회	7회 개최 필요 [각군 2회, 국방부 4회, NSC 1회]	3회로 감소 [“신설청” 2회, NSC 1회]
결재단계	14단계 [각군 사업단(3회) → 각군 기참부(5회) → 국방부(4회) → 국무총리 → 대통령]	9단계 [“신설청” 사업부서(3회) → “신설청” 계획부서(3회) → 국방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업무체계	국방부 · 각군 · 기관간 협조	“신설청” 내부 협조

※ 예산편성 · 집행,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등의 경우도
간소화 가능

나. 합리적인 자원배분

< 현 실태 >

- 합동전장운용개념에 입각한 군사력 건설 Vision 미흡
 - 각군은 자군 편향의 경쟁적 소요제기
 - 합참은 통합전력 확보를 위한 조정 미흡, 전력 불균형 초래
- 무기체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소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주 소요결정을 바꿔 자원배분 불균형 초래
- 각군별 배분비율을 사전 할당하는 불합리한 자원배분체계 유지
 - 자군 외형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에 치중하여 현존 전력 보강·활용 및 공통분야(C4I전력 등)에 대한 투자 소홀
- 의사결정체계의 특정군 편중으로 균형적 소요결정 곤란
 - 합참 소요기획부서 과장급 이상 27개 직위중 특정군 16명(59%) 보직
 - * 선진국(미, 일)의 경우 주요 직위를 법제화하여 육·해·공군 균형 보직
 - 소요결정 관련 각종 위원회도 특정군 중심으로 운영
- 정부재정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획득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잦은 변경, 사업 지연 및 추가 예산소요 발생

< 개선안 >

- 합참 주관으로 각군 및 안보전문가 참여하에 합동군사력 건설 Vision 정립
 - 합동군사력건설 Vision에 근거한 **Top down**방식의 소요 제기·결정 제도화
 - 전투실험 등 과학적 기법에 의한 소요검증 확대
 - 각군의 소요제안부서(육군 교육사, 해공군 전발단)의 전투발전기능 강화
 - 소요제기시 전투실험, 모의분석 모델 운용결과 첨부
- 국방부(합참)가 긴요도를 고려해 무기체계의 객관적인 투자 우선순위 설정, 신설청은 이를 기준으로 자원배분토록 제도화
 - 우선순위 검증위원회 운영, 우선순위 설정기법 표준화
 - 우선순위에 따른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 합리적인 소요기획 의사결정체계 구축
 - 소요기획(결정, 검토, 분석 등) 관련보직 육·해·공군 균형 배치와 일정비율(약 30%)의 획득전문인력(획득병과 또는 전문인력직위자) 참여 제도화
 - 소요결정 관련 위원회에 육·해·공군 균형 구성 및 “신설청 소속 공무원” 참여 제도화
-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자원범위 내에서 획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국방중기계획의 안정성·일관성 제고
 - 국방부, “신설청”, 기획예산처간 자원배분 협의 정례화
 - * 전력투자비·경상운영비 구성비, 연구개발비 규모 등 협의

다. 효율적인 사업관리

< 현 실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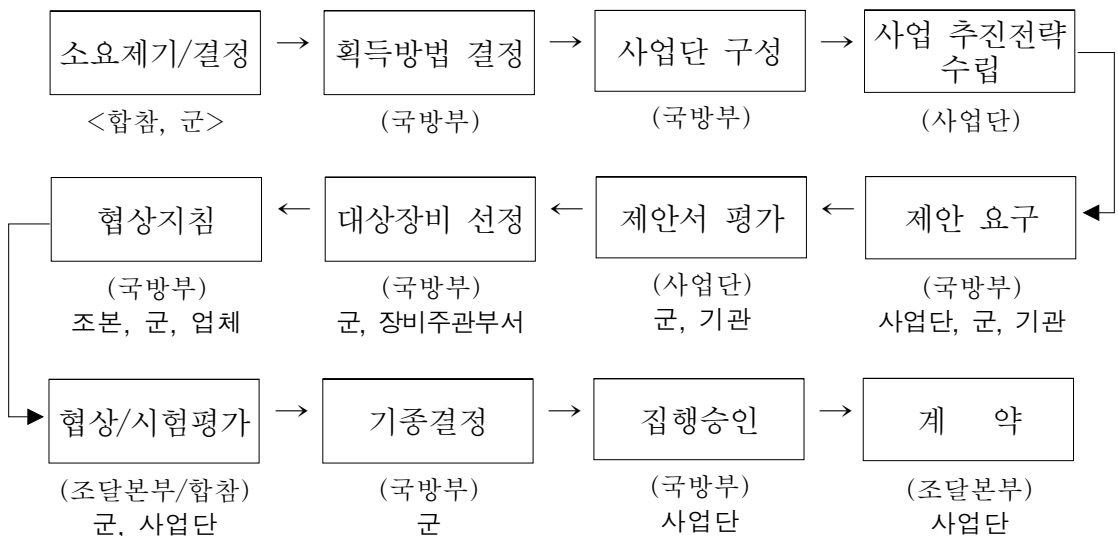
- 사업관리 기능이 국방부, 각군 등으로 분산·중복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책임한계가 모호

< 개선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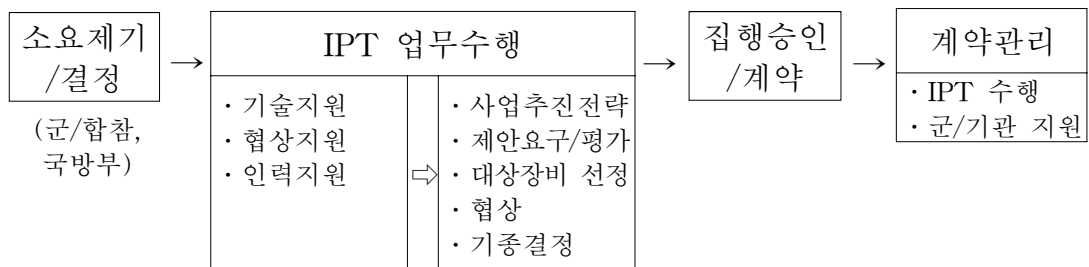
- “통합사업관리(Integrated Project Team) 제도” 도입
 - 계획, 예산, 협상·계약, 품질보증, 감독, 사업관련기술, ILS 기능 등 Matrix형태로 편성, 소요결정이후부터 사업종결시까지 사업책임자 관장하에 책임 운영
(신설청 산하 사업관리본부를 여러 개의 IPT로 구성)

< 업무수행절차 비교 >

• 현 행



• 통합사업팀(IPT) 도입시



※ 목표관리, 비용/효과분석

라. 안정적인 장비운영유지

< 현 실태 >

- 수리부속의 적시 조달 실패(업체 생산 기피, 생산능력 부족, 해외 조달능력 부족 등)에 따른 유휴 고가장비 빈발
 - * 예산낭비, 전비태세 악화 초래
- 국방규격 과도한 적용 및 소홀한 규격관리 등으로 경쟁 제한 및 고가구매 초래

< 개선안 >

- 국산화 등을 통한 수리부속품의 안정적 지원 확대
 - 조달애로 수리부속품을 “부품국산화5개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
 - 국산화 업체 지원 확대 (개발비지원, 수의계약 보장 등)
- 해외 군수무관을 통한 현지구매(10만불 이하) 활성화 및 구매 정보(외국 부품생산업체, 가격정보 등) 상시 관리 강화
- 국방규격 전면 재정비(민간전문가 참여 “규격적부심의회” 신설)
 - 상용규격 활용 확대 및 민·군 규격 통일화 추진

2.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기본 방향 >

- 합리적 인력구조 확보
-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및 관리체계 구축

가. 인력구조 개선

< 현실태 >

- 현역군인·군무원 중심의 인력 구조
 - 일반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활용 제한
 - * 총 2,500여명의 획득종사 인력중 일반직 공무원은 126명
 - 장기사업(7~10년)을 단기순환(2~3년 단위) 보직하는 현역 군인 위주로 수행하여 전문성 축적 및 효율적 사업관리 곤란

< 개선안 >

- “신설청”의 민·군 인력의 구성비율을 일반직 공무원이 60% 이상 되도록 조정
 -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나. 전문인력 양성·활용 확대

< 현실태 >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미흡
 - 1회성 단기 보수교육 과정만 운영(국방대학교 사업관리과정, 7주)

<선진국의 인력양성체계>

- 미국·프랑스 : 국방획득대학(DAU), 기술학교 등 설치·운영
 - * DAU :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 개선안 >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및 국내·외 위탁교육 확대
 - 국방대학교 내에 “국방획득대학(획득전문과정)” 설립
- 공직 내·외의 우수인력 적극 활용
 - 타부서 우수공무원 영입 확대
 -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시행 등
 - 통상직, 기술직 등 전문직 공무원 채용 및 개방형 직위 확대

다. 인사관리체계 개선

< 현실태 >

- 체계적인 인사관리 미흡
 - 현역 군인의 경우, 정책부서와 야전부대간 단기 순환보직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타부서와 순환 보직
 - * 전문성 구비인력 극소수에 불과

<선진국의 인력관리체계>

- 미 국 : 획득인력전문화법(DAWIA)를 제정하여 보직자격제도 운영
 - * DAWIA :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
- 프랑스 : 전문교육을 이수한 병기군(4군)이 획득업무 주도

< 개선안 >

-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만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자격제도” 시행
- 현역군인의 경우 필요한 부서에 장기보직 가능토록 “획득병과(또는 전문인력직위)”를 신설(지정)
 - “신설청장”에게 획득분야 군 인사관련 일정 범위의 인사권한 부여(교육, 보직, 진급추천, 진급공석 등)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전문인력의 장기보직 유인 제공
 - * 국외·민간분야 근무기회 제고, 국내·외 위탁교육 확대 등

3.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본 방향 >

- 획득업무의 적법성 및 보편성 확보
- 정부공통 조달기준 적용
- 내·외부 통제 강화

가. 획득관련 법령체계 정비

< 현 실태 >

- 막대한 예산수반사업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방부 내부훈령(국방획득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
 - 빈번한 훈령 변경으로 업무혼선 초래(‘99년 이후 매년 1~2회 훈령 개정)
 - 특정사업을 위해 별도규정을 제정하는 등 행정 편의적 규칙 제정권 남발
 - 대외적 신뢰 확보 제한 및 부정·비리 발생의 원인 제공 가능

< 개선안 >

- 국방획득업무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방획득및방위산업육성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
 - 국방부훈령 중 무기체계 획득관련사항 +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합

나. 일반물자 및 주요 시설공사 계약업무 조달청 활용 확대

< 현 실 태 >

- 조달청 구매 정부물자와 유사한 군수 일반물자도 국방부 자체 조달
 - 정부공통기준 적용 및 경제성 확보 미흡
- 군 시설공사 전 과정(설계, 계약, 감독 등)을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행
 - 조달청의 전문성(원가계산, 가격조사 등) 미활용으로 예산낭비 및 비리발생 개연성 상존
- 군 시설공사 관련자료 공개 미흡 및 전자입찰 실적 저조
 - '03. 7월부터 전자입찰 전면시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행 실적 저조
 - 입찰종료 후 업체투찰가격, 예정가격 등의 공개 지연(15일정도 경과)으로 인해 항의성 민원제기 및 비리의혹 유발

< 개 선 안 >

- 군수일반물자 중 정부물자와 조달원(업체)이 동일한 품목(의약품, 일반장비, 피복류 등)은 조달청에 위탁 구매
- **3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
- 시설공사 전자입찰 전면 실시 및 개찰 즉시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

다. 상시감시 및 견제시스템 강화

< 현실 태 >

- 과도한 군사보안기준 적용으로 불필요한 비밀정보 남발
 - 국방중기계획서 등 획득관련 주요 문건의 공개 제한
- 획득사업 추진과정의 폐쇄성으로 투명성 논란 지속
 - 국방획득관련 19개 심의회·협의회 중 민간인 참여 회의체 전무
- 분석평가의 외부 전문기관 활용 기피로 평가결과의 신뢰 결여
 - 평가결과에 의한 사업 조정 등 사업 Risk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역할 부족
- 획득비리는 민·군 공범구조를 특징으로 함에도 민·군 수사기관간 공조 부족으로 원활한 수사 곤란(비리 은폐·축소 가능성 내재)
 - 국방부, 각군, 검·경 등 내·외부 감시 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 원활한 수사 제한으로 부정·비리 미온적 처벌, 재발 우려

< 개선 안 >

- 획득관련 문서(국방중기계획서 등), 사업추진관련 정보(의사결정 결과, 관련자, 진행단계, 평가결과)의 공개범위 확대
 - 관련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범위·방법 등 결정

- 민간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무기체계 기종결정 등 주요 심의회·협의회 등에 참여 확대
 - 법무법인, 국제통상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인력 활용 확대
 - * 민간전문가 Pool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 단계별 분석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로 내·외부 전제 역할 강화
 - 국내·외 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한 분석평가의 Outsourcing 확대
- 감시기관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체계 구축
 - 내·외부 신고·고발시스템 운영
 - 감시기관간 협의회 정례화
 - 비리 발생시 현역군인·민간인 동시 수사 및 정보공유 제도화 (수사이첩 의무화 등)

라. 획득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현실 태 >

- 사업추진의 일관성 미흡 및 책임한계 모호
 - 부서·단계별로 한정된 업무만 수행
 - 문제발생시 부서간 책임 전가

< 개선 안 >

- 정책결정 및 사업관리 실명제 강화
- “청렴서약제” 도입(세부 추진방안은 추후 검토)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본 방향 >

-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 연구개발 역량 확충

가. 방위산업 경쟁력 활성화 및 수출 촉진 지원

1) 방위산업 규제정책 개선

< 현실 태 >

- 무기체계 분야별로 1개 업체를 先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에 지나친 독점을 보장하는 『전문화·계열화제도』를 유지
 - 독점적 지위 보장으로 기술개발,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유인 부족
 - * 37개사 중 연구인력 부재 11개사, 개발비 미투자 15개사('02방산경영분석, 국방부)
 -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후발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

< 개선 안 >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
(금년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07년말 일괄 폐지)
 - 절차 재정립 및 기존 방산업체의 경영전략 변경 등 경쟁체제 대비기간 부여
 - 신규사업 업체 선정시 일정기간 기 투자된 인원 및 시설·장비 등을 평가에 반영
 - 제도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부문 위축 예방을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벤처기업 육성지원 등 정부 정책과 연계)을 강구

2) 방위산업 육성 지원

< 현 실 태 >

- 국외도입 위주의 전력투자사업 시행으로 적정 방산물량 확보 곤란
 - 수출물량 확보 부족으로 내수 위주의 단기 생산체제 유지
 -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정과 연계된 정비시설·인력 활용이 가능함에도 군자체 정비시설 운영으로 업체시설 유향화 및 중복투자 초래

-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 유인 결여

- 발생원가에 대한 고정 이윤율(9~16%) 적용 등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 및 기술개발 투자 기피
 - *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 절감시 오히려 이윤이 감소되어 업체의 기술개발 투자 기피
- 업체 참여 없이 정부 단독의 일방적 방산원가기준 제정으로 합리적 기준 설정 미흡

- 미 국 : 의회 직속의 원가회계기준 위원회 운영
- 일 본 : 제 3자의 독립적인 원가계산 연구회 운영

- 비리의혹을 우려하여 방산업체와의 인력·정보교류 기피
(배타적 관계 유지)

< 프랑스의 경우 >

- 병기본부와 업체간 활발한 인력·정보교류 시행
 - * 방산업체 CEO를 병기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 무기체계 수출시 정부와 업체가 합동으로 홍보 활동

< 개선안 >

- 소요결정과 국내개발의 연계성 강화 및 방산 육성정책 추진
 - 무기체계 소요결정시 국내기술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력화시기 및 성능을 결정
 -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비용 관리
 - 업체 외주정비 확대를 통해 기 구축된 생산시설 재활용
- 업체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원가제도 적용 확대
 - 원가절감액의 일부를 업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유인부 계약제도” 적용 확대
 - 정부, 업체,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원가계산기준심의회” 설치·운영
- “신설청”과 방산업체간 **Partner-Ship** 제고
 - 획득관련문서(국방중기계획서 등) 정보공개 확대 및 공개 설명회 정례화
 - 정부·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발굴 확대
 - “신설청”과 업체간 인적교류 활성화
 - 방산업체 사업관리 유경험자 개방형직위 채용 등

3) 방산수출 활성화

< 현 실 태 >

- 정부차원의 방산 수출지원 및 마케팅 활동 등 지원 미흡
 - 관련부서(국정원, 외교통상부, KOTRA 등)간 협조체계 미흡
 - 선진국 대비 방산수출 지원부서 취약
 - 국방부 국제협력과 12명, 방위산업진흥회 2명

- 프 랑 스 : 병기본부내 2개국(국제협력국 160명, 산업협력국)
- 영 국 : 국방부내 방산수출지원국(DESO) 621명 규모
- 이스라엘 : 국방부내 대외군사지원·수출국(SIBAT) 50명 규모

< 개 선 안 >

- 국가차원의 방산수출 지원활동 강화
 - 범 국가차원의 수출지원체계 구축
 - * 관련기관(신설청, 국정원, 외교통상부, KOTRA 등)간 수출지원협의체 운영
 - 수출지원 서비스(기획, 마케팅 지원 등)를 수행하는 지원부서를 “국”단위로 강화

나.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현실 태 >

- 국방 연구개발 정책상 국방연구개발비를 2015년까지 국방비의 10%수준으로 점진적 증액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감소 추세
 - 국방연구개발비의 지속적 감소 : '00년 5.2% → '04년 4.2%

< 선진국 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01년 기준 >

- 미국(13.8%), 영국(12.2%), 프랑스(13.0%), 독일(6.4%), 러시아(10.0%)

- 완성품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핵심기술개발 위축
 - 기술축적 중심의 연구개발 제한

< 개선 안 >

- 국방연구개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투자 확대
 - 2015년까지 국방비의 10%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증액
- 국방연구개발비의 20%수준을 핵심기술개발비로 안정적 배분
 - ※ 자원배분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설정

2) 국방과학연구소 기능 강화

< 현실 태 >

- 국방과학연구소의 합리적 운용 미흡
 -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 쏠 분야를 독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핵심기술과 전략무기에 대한 개발역량 집중 제한
 - *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활용 미흡
 - '04년 기준 60~70%의 인력·예산을 일반무기 개발 및 지원 분야에 투입

○ 열악한 연구 여건

- 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원의 처우가 열악
- 주요 직책(소장, 부소장 등)의 군 출신 위주의 운영으로 우수 연구원의 승진 기회 제한
- 무기체계 복잡도·난이도 및 연구과제는 증가되었으나 연구 인력 감소로 업무 과중

* '90년도 2,766명(연구비 1,453억원) → '04년 2,503명(연구비 5,091억원)

※ 국방과학연구소가 '70년대 최상위 연구기관에서 우수인력이 기피하는 연구기관으로 전락

< 개선안 >

○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간 역할 재정립

- 국과연 조직·인력을 핵심기술·전략무기 개발 중심으로 재편
 - * 체계개발본부 단계적 축소 → 핵심기술·전략무기 연구부서로 재편
- 시험평가·연구실험시설 기반 확충 및 현대화 추진
- 일반무기분야의 신규개발은 업체주도 연구개발로 대폭 전환
 - *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과연이 보유한 기술 이전 및 시험 시설의 방산업체 제공 확대

○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 국방 R&D분야에 우수 이공계 인력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 *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진출 기회 보장
- 핵심기술 축적·발전을 위해 부족한 연구인력 보장

3) 체계적인 국방기술관리

< 현 실 태 >

- 국방기술 관리조직의 분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방기술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
 - 기술관리 조직이 각 군, 국과연, 품관소, 조달본부로 분산
 - 비전문인력(현역군인, 행정직 등)이 기술기획업무 주도
 - 연구개발 종료 후 성능개량(또는 후속사업) 추진시 기술정보 활용도 저조

< 개 선 안 >

- 가칭 “국방기술정보센터”를 “신설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
 - 기술 조사·분석·평가, 기술정보 수집·배포 및 기술지원 기능 통합·강화
 - 국방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기 개발기술의 재활용 활성화

- 전문인력(연구직, 기술직 등)이 기술기획업무 주도적 수행

4) 국방 R&D 보편성 제고

< 현실 태 >

- 국과연에서 국방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독점적으로 수행
 - 민간업체, 정부 출연기관 등 타 기관의 우수한 기술력 활용 미흡 및 중복투자 우려
- 국방 R&D분야는 국방부 전담평가로 평가결과 신뢰 결여
 - 타 정부부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평가
 - '04년 국방 R&D 예산(7,968억원) 중 범정부 차원의 평가 대상은 민·군겸용기술, 기초연구 등 1~2% (약 150억원) 수준에 불과

< 개선안 >

- 산·학·연 기술력 활용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 확대
 -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산·학·연 우위기술을 사전 식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개발 추진
 - 민·군겸용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범정부적 기술개발 노력 결집
- 국방 R&D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 적용 확대
 -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와 연계 평가
 - NIS :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5) 연구개발절차 간소화

< 현 실태 >

- 연구개발 단계(개념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별 통제위주의 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절차가 많고, 전력화에 긴시간 소요
- 경직된 작전운용성능(ROC) 적용, 복잡한 시험평가절차 등으로 최신기술을 제때 활용 못해 신규개발 투자효과 달성 미흡

* 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 개선안 >

-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 절차 개선
 - 소요결정 직후 조기 개념연구 착수
 - 계획승인과 집행승인 단계를 통합
- 시험평가 기간 단축
 - 기술시험평가(개발자)와 운용시험평가(운용자) 통합 수행
 - 운용시험평가 단축(4계절 → 3계절)
 - 실험실평가 합격으로 대체 가능시 야전 운용시험평가 생략
-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제때 반영하여 즉시 성능개량이 이뤄지도록 진화적 작전운용성능(ROC) 설정체계 적용

V. 기대효과

□ 최적[적기에(Faster), 질 좋은 제품을(Better), 경제적(Cheaper)]의
무기체계 획득

□ 고객 지향의 획득행정 구현

○ 국 민 : 예산절감

○ 방 산 업 체 : 최선의 행정서비스

(강화된 기술정보 제공, 수출지원, 친절한 상담, 구매 등)

○ 소 요 군 : 질 좋은 장비의 적기 제공

□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보장

○ 반복적인 획득관련 비리의 악순환 차단

○ 획득분야를 복마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 불신 극복

□ 효율성·전문성·투명성 원칙아래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 궁극적으로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

VI. 향후 추진계획

- '05. 2월 정부조직법 개정
 - 여성가족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병행(또는 단일 수정안 제출)하여 개정 작업 진행
 - 정부조직법 개정안 핵심내용
 - 청신설 근거 및 청장·차장 직위 설치근거 설정
 - 주요 직위의 현역군인 보직근거 설정
- 주요 핵심과제 연구용역 추진
 - 현 획득분야 직무분석 및 적정 인력구조 분석('05. 1~3월)
 - 국방획득조직 재설계를 위한 업무절차 재정립 (BPR, ISP)
 - 타당성 심층 검토 후 상반기중 추진
 -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 재설계
 -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 : 정보화전략계획
- '05. 3~6월 관련법 제·개정(안) 일괄 입법 추진
 - 가칭 “국방획득및방위산업육성등에관한법률”, “신설청직제령” 등 제정
 -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 법령·규정 개정
- '05. 6~7월 “신설청” 개청 준비단 발족
 - 현행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국방 T/F를 중심으로 국방부 소속의 “개청준비단” 신편
- '05. 7~12월 개청 준비
 - 각종 제도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
 - 기존 사업 및 계약 인수인계방안 수립
 - 연구원, 군무원 등 신분전환 작업 수행
 - 국과연, 품관소, 기술정보센터 등 연구기관 개편작업 수행
 - 실무자 인선, 청사 입주 등
- '06. 1. 1일 “신설청” 개청

